

## 조사 결과 및 조치할 사항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게임 콘텐츠 산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(담당자의 명시)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는 그 담당자의 소속·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나, 게임 콘텐츠산업과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시 소속부서, 연락처는 기재하고 담당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</li><li>☞ 민원답변 시 민원답변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“현지시정” 조치</li></ul>